

보도상의 불법주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 보도상 불법주차 실태와 관리 필요성
-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방향
- 효율적인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 방향
-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개선방향

보도상의 불법주차 실태와 관리 필요성

○ 보도상의 불법주차 실태

- 현재 서울시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린파킹 2006 등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주간활동인구의 증가와 승용차의 지속적 증가로 인해 주차공간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음.



[그림 1] 서울시의 보도상 불법주차 실태

- 이러한 불법주차는 차로나 보도상에서 주로 행해지는데, 특히 보도상의 불법주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보행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소로 지적되고 있음.

○ 통학로의 불법주차 실태

-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보행공간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불법 주·정차와 교통혼잡으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다고 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표 1> 참조). 즉,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으로 인해 50% 이상이 통행에 불편을 느꼈다고 답했는데, 이는 차량으로 인한 통학로 보행공간 침해의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표 1>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의 보행공간 조사결과

질 문	그렇다		아니다		계
	응답자수	%	응답자수	%	
1 인도가 없다	62	(24.3)	193	(75.7)	255(100.0)
2 인도와 차도가 가드레일이나 경계턱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99	(38.8)	156	(61.2)	"
3 인도가 있으나 중간에 끊긴 곳이 있다	93	(36.5)	162	(63.5)	"
4 인도가 있으나 깨지거나 부서진 곳이 있다	60	(23.5)	195	(76.5)	"
5 인도가 있으나 쓰레기로 막혀 있는 곳이 있다	74	(29.0)	181	(71.0)	"
6 인도에 상점 간판대나 오라키 등으로 막혀 있는 곳이 있다	92	(36.1)	163	(63.9)	"
7 차량이 불법 주·정차되어 있다	146	(57.3)	109	(42.7)	"
8 공사장이 있으며 위험표시가 없거나 미흡하다	54	(21.2)	201	(78.8)	"
9 공사장 건축 자재 때문에 보행공간이 부족하다	45	(17.6)	210	(82.4)	"
10 학교주변 도로의 교통량이 많고 혼잡하다	163	(63.9)	92	(36.1)	"

출처 : 세이프키즈(SAFE KIDS) 코리아 (<http://www.safekids.or.kr>), 2004. 3

- 또한, 통학로의 불법주차는 횡단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시야차단은 조심성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심각한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표 2> 도로횡단 관련 통학로 조사결과

질 문	그렇다		아니다		계
	응답자수	%	응답자수	%	
1	72	(28.2)	183	(71.8)	255(100.0)
2	76	(29.8)	179	(70.2)	"
3	107	(42.0)	148	(58.0)	"
4	137	(53.7)	118	(46.3)	"
5	132	(51.8)	123	(48.2)	"

출처 : 세이프키즈(SAFE KIDS) 코리아 (<http://www.safekids.or.kr>), 2004. 3

○ 보도상의 불법주차 관리 필요성

- 불법주차는 발생유형에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지만 불법주차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
- 흔히, 차로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는 비교적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보도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정책당국이 보도상의 불법주차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점보다 차로상의 불법주차가 차량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더욱 중요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서울시 교통체계가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되고 보행자 중심의 가로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재, 보도상의 불법주차는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임.

효율적인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방향

-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보도, 어린이 통학로의 불법주차를 우선 관리해야 함.
 - “완벽한 보도상의 불법주차 근절”이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의 목표이겠지만, 이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도상 불법주차의 발생유형별로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함.
 -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은 시작과 끝, 그리고 환승이 보행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의 결절점인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주변은 보행통행량이 항상 많은 지역임. 따라

서,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보도상 불법주차 차량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 차량보다 보행통행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므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함.

- 보행은 어린이의 등·하교 수단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안전을 위해 어린이의 보행통행은 차량으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또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 따라서, 어린이 통학로의 불법주차 또한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상임.
- 지하철역·버스정류장 주변 보도에서는 물리적 시설 이용, 차등 과태료 적용 등 적극적인 불법주차 관리필요
 - 보행이 활성화된 유럽의 도시들은 보행공간인 보도를 차량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데, 그 수단으로 다양한 형태의 볼라드를 이용하고 있음.



[그림 2] 물리적인 시설을 이용한 보도의 불법주차 관리 사례(독일 마인츠)

- 불법주차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 중의 하나가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인데,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의 보도상 불법주차는 그 영향이 다른 지역의 불법주차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차도에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행공간 보호 필요
 - 불법주차 차량과 더불어 빠른 속도의 차량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
 - 따라서, 어린이 통학로에서는 차량 속도의 규제가 필요한데, [그림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차도를 축소하여,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차량의 속도를 감소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행공간을 불법주차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얻고 있음.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그림 3] 차도에 합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도를 보호한 사례(독일 마인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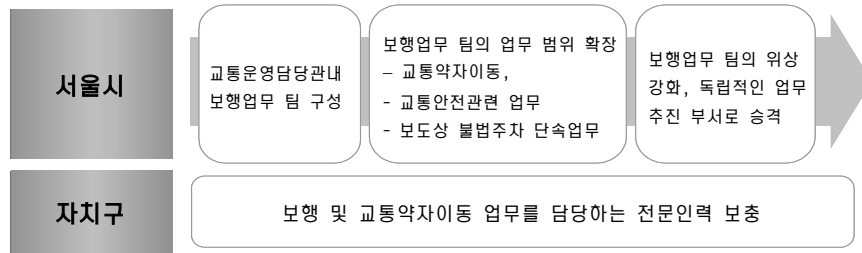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방향

-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보도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현재, 일반적인 도로의 이용과 규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음. 보도에 대한 정의와 보행자통행에 관한 사항 또한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6호)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때,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보도를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조 2항)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8조 2항)
- 도로교통법은 많은 부분이 차량과 차도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행에 관한 사항은 위와 같이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있음. 즉, 보도 설치 기준, 보도 관리 등 보도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거의 없음.
- 「도로교통법」 개정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현재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등으로 차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항으로 이용 및 관리를 정하고 있듯이, 보도도 차도와 같이 위계를 정하여 보도 설치기준과 관리방법을 달리해야 함. 즉, 보행통행량이 많아 보행간선의 기능을 하는 보도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이 위치하는 보도에 관해서는 공사중 보도관리 방안, 보도상의 금지행위, 보도관리 주체, 위반시 처벌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체계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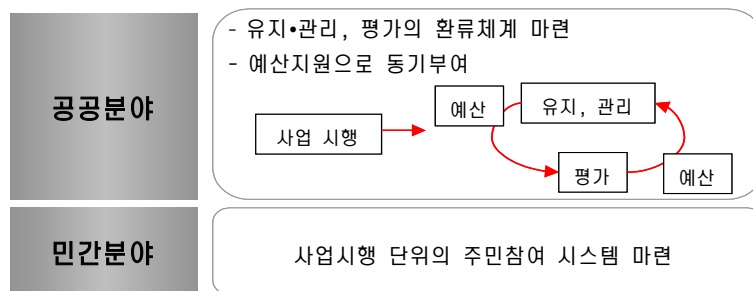
-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 업무는 보행업무의 하나로서 보행담당기관에서 관리 필요
 - 현재 주차관련 업무와 보행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업무추진체계는 분리되어 있음. 주차관련 업무는 교통국의 주차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보행관련 업무는 교통국의 교통운영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보도상의 불법주차가 주차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 발생하는 장소가 보도라는 점과 보행통행에 큰 지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도상 불법주차 문제는 보행업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도상의 불법주차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체계는 보행업무 추진체계에 포함시켜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4)는 서울시의 보행업무 추진체계의 개선방향을 간략하게 도식화한 것임.



[그림 4] 서울시 보행업무 추진체계 개선방향

○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

-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공간일 뿐만 아니라, 보도를 따라서 들어선 많은 상점들과 주요 건물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동 공간임.
- 따라서, 보도의 관리는 단순히 공공기관만의 업무가 아니고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고 공공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정비한 보도가 불법주차 공간과 오토바이의 통행로로 전락한 예를 보면 그 중요성을 한층 더 실감할 수 있음.
- (그림 5)는 보도상 불법주차 관리업무를 포함한 보행업무에서 민관협조 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공공분야에서는 사업시행, 유지·관리 및 평가, 예산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분야에서는 행정동 단위가 아닌 사업단위로 주민참여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공분야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그림 5] 보행사업의 민관협조 체계 구축방향

02-2149-1117
newsun@sdi.re.kr